

국토교통부훈령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연 월 일	2022. 12.

1. 개정이유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동일 유형의 신규 주택 예비자로 선정되면 기존 지위는 상실되며, 신규 주택에서도 60일 이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신규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도 함께 상실되고 있어, 모든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규정 추가(안 제3조 제2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1577 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